

# 강원도립대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

(제정) 2015-03-26 규정 제366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” 및 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”에 의거,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(이하 “영향평가”라 한다)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대상) 이 규정의 적용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(논술 등 필답고사, 면접·구술고사, 신체 검사, 실기·실험고사 및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말한다)를 대상으로 하되, 실기고사(예체능)는 적용에서 배제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제2조에 따른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,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, 위원은 종합정보관장, 학생생활관장, 산학협력단장이 당연 위원이 되며, 관련 분야 전문가 및 현직 고교교사와 학부모 중 1인을 외부위원으로 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6.4.25.>

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담당이 된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에 관한 사항
2. 영향평가의 평가영역, 내용,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
3. 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
4. 선행학습 방지 대책과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
5. 기타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) ① 영향평가는 해당 학년도 입시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.

②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결과의 공시)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타) 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(2015. 3. 26.)

이 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